

정 관



**한국인공지능·
소프트웨어산업협회**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협회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0조에 의하여 설립하며 한국인공지능·소프트웨어산업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 <개정 2021. 3.15, 개정 2025.5.29. >

제2조(목적) 본 협회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이용촉진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)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
2.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
3. 소프트웨어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
4.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
5.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정대가의 기준연구 및 노임단가의 조사
6. 소프트웨어 유통촉진과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
7.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사업에 관한 사항 <신설 2025. 3.13.>
 - 가. 인공지능기술 및 제품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확산
 - 나. 인공지능 산업등의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
 - 다. 인공지능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
 - 라.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
 - 마. 인공지능사업자 및 인공지능 관련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지원
 - 바.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·활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
8. 회원의 공동이익 및 협력을 위한 회원진흥사업 <개정 2025. 3.13.>
9. 회원의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사업 <개정 2025. 3.13.>
10.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해외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<개정 2025. 3.13.>
11. 국내외 소프트웨어 관련 세미나,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관련 사업,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 <개정 2021. 3.15, 2025. 3.13.>
12. 소프트웨어 외주 용역 추천사업 <개정 2025. 3.13.>
13. 예산편성 및 시행에 관련된 시장조사, 원가계산, 원가검토, 민간 위탁 및 사

- 업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연구 <개정 2025. 3.13.>
14. 소프트웨어 하도급 분쟁조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<개정 2025. 3.13.>
15. 소프트웨어 기술자력에 관한 사항 <개정 2025. 3.13.>
16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임사업 및 학술연구용역 <개정 2025. 3.13.>
17. SW영향평가제도, SW법제도 관리감독 등의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<신설 2019. 3.13>, <개정 2025. 3.13.>
18. 기타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관련 산업진흥과 협회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<신설 2019. 3.13.> <개정 2025. 3.13.>

제 2 장 회 원

- 제5조(회원)** ①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, 특별회원, 통상회원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07.3.13.>
- ② 정회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영위하려고 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갖는 자로 한다.
- ③ 특별회원은 소프트웨어산업발전에 관련되는 정보통신관련업체, 연구단체, 기타 단체로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갖는 자로 한다.
- ④ 통상회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영위하려고 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의결권을 갖지 않고 별도 규정에서 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 자로 한다.
- ⑤ 회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.

제6조(가입)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회원의 의무)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
1. 정관 및 규정 준수의 의무
2.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의 의무
3. 회비 납부의 의무

제8조(탈퇴 및 제명) ① 회원이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미납된 회비는 납부하여야 하며, 기 납부된 회비 중 선납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할 수 있다.

②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.

1.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
2. 6개월 이상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
3.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

제 3 장 임 원

제9조(임원) ①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 <개정 2015.3.6., 2021.3.15., 2022.3.17., 2023.3.24.>

1. 회 장 : 1 인
2. 수석부회장 : 3 인 이내
3. 부회장 : 45 인 이내 (수석부회장 포함)
4. 이 사 : 118 인 이내 (회장, 부회장 포함)
5. 감 사 : 2 인

② 비상근직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상근직임원은 비회원 중에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출한다. 단, 선임된 임원이 임기 중에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경우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, 이 때,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<개정 2010. 3.11.>

③ 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회장 1인, 이사 1인은 총회의 결의로서 상근직을 선임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4. 1.>

④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4. 1., 2023. 3.24>

1. 임원 선임을 결의한 총회 회의록 1부
2. 삭제 <2023. 3.24>
3. 삭제 <2023. 3.24>

제10조(임원의 직무) 임원의 직무는 각 호와 같다.

1.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.
2.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단회의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 운영상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. <개정 2014. 4. 1.>

3.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운영상의 제반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.
4. 감사는 협회의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5.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다음의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0. 3.11., 2021. 3.15.>
 - 가. 수석부회장 중 연장자
 - 나. 부회장 중 연장자 순

제11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3.13.>

- ②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- ③ 임원의 임기 만료 후라도 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임기 중으로 본다.

제12조(임원의 의무와 책임) ① 협회의 임원은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-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밀을 누설하거나 타 회원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임원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.

제13조(임원자격의 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제14조(명예회장 및 고문) ① 본 협회는 명예회장 및 고문(이하 명예회장 등이라 한다.)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9. 3.13>

- ② 명예회장은 협회에 공로가 현저한 전임회장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. <신설 2019. 3.13>
- ③ 고문은 본 협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선임한다. <개정 2019. 3.13>
- ④ 명예회장 등의 임기는 임원임기에 준하며, 제9조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3.13>

⑤ 명예회장 등은 제13조 임원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여야 한다. <신설 2019. 3.13>

⑥ 명예회장 등은 협회 주요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, 협회의 위상제고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3.13>

제 4 장 회 의

제15조(총회)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. 단,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기총회 개최를 2월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연기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3.11.>

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.
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이사회 재적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3. 회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유를 명기하여 이를 요청할 때

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이전에 회원에게 회의 안건,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0. 3.11.>

제16조(총회결의사항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정관의 변경
2. 업무계획 및 업무실적 보고의 승인
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4. 임원의 선출과 해임
5. 해산, 합병, 분할
6.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7. 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

제17조(이사회) ① 이사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이사로서 구성하며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 <개정 2014. 4. 1.>

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이전에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 안건,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0. 3.11.>

③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

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0. 3.11.>

④ 이사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0. 3.11.>

제18조(이사회 의결사항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회원의 자격 및 구성에 관한 사항
2.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3.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4. 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
5. 규정의 제정 및 변경
6. 손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
7. 지부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
8. 기타 협회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9조(정족수 및 의결) ① 총회는 회원의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4. 7. 9.>

② 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회원의 5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4. 7. 9.>

1. 정관의 변경
2. 협회의 합병 및 해산

③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.

제19조의1(의결권의 대리) ① 회원은 총회에서 이사는 이사회에서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<신설 2010. 3.11>

② 전항의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. <신설 2010. 3.11>

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총회 또는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0. 3.11>

제20조(위원회) ① 본회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 및 규정은 이사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정한다.

제21조(의사록) 총회 및 이사회 의의사록은 회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회원 2인이 서명한 후 이를 협회에 보관한다.

제 5 장 회 계 및 재 산

제22조(수입금) 본 협회의 수입금은 입회비, 회비, 찬조금,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이를 충당한다.

제23조(회비의 부과징수)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24조(회계년도) 본 협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
제25조(재산)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결정한 재산
2. 매 사업년도 결산 상 잉여금 중 적립금
3. 기타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
③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④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한다.

제 6 장 사 무 국 등

제26조(사무국) ① 본 협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
② 사무국의 직원은 소정의 규정에 따라 회장이 선임한다.

③ 사무국의 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제정한다.

제 7 장 보 칙

제27조(승인 및 보고)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 <개정 2014. 4. 1>

1. 정관의 변경
2. 협회의 합병 및 해산
3. 상근임직원의 정수
4. 정부보조금의 사용

②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4. 1>

1. 사업계획 및 예산,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
2.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3.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
4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<개정 2014. 4. 1>

제28조(해산 후 잔여재산의 처분) 협회가 해산한 후의 잔여재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. <개정 2014. 4. 1>

부 칙

-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1988년 6월 8일로부터 시행한다.
- 이 정관은 1989년 2월 17일부터 개정. 시행한다.
- 이 정관은 1991년 2월 8일부터 개정. 시행한다.
- 이 정관은 1994년 2월 18일부터 개정. 시행한다.
- 이 정관은 1995년 2월 14일부터 개정. 시행한다.
- 이 정관은 1996년 8월 1일부터 개정. 시행한다.
- 이 정관은 1997년 3월 31일부터 개정. 시행한다.
- 이 정관은 1998년 2월 24일부터 개정. 시행한다.
- 이 정관은 1999년 3월 16일부터 개정. 시행한다.

이 정관은 2000년	7월 22일부터	개정. 시행한다.
이 정관은 2001년	3월 26일부터	개정. 시행한다.
이 정관은 2005년	5월 21일부터	개정. 시행한다.
이 정관은 2006년	3월 7일부터	개정. 시행한다.
이 정관은 2007년	3월 13일부터	개정. 시행한다.
이 정관은 2009년	4월 17일부터	개정. 시행한다.
이 정관은 2010년	3월 11일부터	개정. 시행한다.
이 정관은 2014년	4월 1일부터	개정. 시행한다.
이 정관은 2015년	3월 6일부터	개정. 시행한다.
이 정관은 2019년	3월 13일부터	개정. 시행한다.
이 정관은 2021년	3월 15일부터	개정. 시행한다.
이 정관은 2022년	3월 17일부터	개정. 시행한다.
이 정관은 2023년	3월 24일부터	개정. 시행한다.
이 정관은 2024년	7월 9일부터	개정. 시행한다.
이 정관은 2025년	3월 13일부터	개정. 시행한다.
이 정관은 2025년	5월 29일부터	개정.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① 이 정관 시행일 이전의 준회원은 이 정관의 시행일로부터 정회원으
로 본다.<개정 2007. 3.13.>

② 제11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 당시 임기가 계속 중인 임원에
대하여도 적용한다. <신설 2025. 3.13.>